



김해진영 센텀큐브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현장접수 불가)**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1 센텀큐브 (김해진영2 B5블록)
 ■ **공급대상** : **예비입주자 74A 10세대, 84A 15세대, 84B 5세대, 84C 5세대, 84D 25세대, 84E 5세대 (총 65세대)**
 ■ **시 행 사** : (주)NHFF제4호공공임대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에서는 마이홈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린 니 다

- 김해진영 센텀큐브(김해진영2 B5블록)는 주택도시보증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F제4호공공임대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주)NHFF제4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주)NHF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모집으로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순번 도래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하시게 되면 만기분양전환(10년 임대 의무기간 경과 시점인 2028년 예정) 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선 분양 전환 자격을 부여합니다.
- 이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6.08.06(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사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중인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김해진영 센텀큐브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순번을 부여하는 주택으로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속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중복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한국부동산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26.08.06**)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 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본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할 때 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예비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 순번을 부여받은 예비입주자(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계약불가)**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신청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은 청약신청기간 내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전산추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배정되며, **주택(분양권 등 포함) 검증 후 무주택자에 한해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됩니다.(동호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모집으로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순번 도래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하시게 되면 만기분양전환(10년 임대 의무기간 경과 시점인 2028년 예정) 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합니다.
-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 고	청약신청 (현장접수 불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방문/등기우편)
2026.08.06(목)	2026.08.18.(화) 10시 2026.08.19.(수) 16시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026.08.21.(금) 16시 이후	2026.08.25.(화) ~ 08.26.(수) (10시 ~ 16시) ※ 등기우편은 2026.08.26(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가급적 빠른등기 발송 요망)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경남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여건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은 2017.12.27.이며, 금회 공급 주택 중에는 퇴거 후 재공급 주택 등도 포함되어,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속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 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I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대상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 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건설 호수	공가 호수	대기 중인 예비 자수	금회 모집 예비 자수	최초 입주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074.8200A	74A	확장	74.82	25.8644	100.6844	5.1160	31.6697	137.4701	51	118	3	-	10	'17.12
084.6900A	84A1	확장	84.69	29.2763	113.9663	5.7909	35.8475	155.6047	58	297	7	-	15	
084.9400B	84A2	확장	84.94	29.3628	114.3028	5.8080	35.9533	156.0641	58	13	1	-	5	
084.9400C	84A3	확장	84.94	29.3628	114.3028	5.8080	35.9533	156.0641	58	11	-	-	5	
084.8600D	84B1	확장	84.86	29.3351	114.1951	5.8025	35.9194	155.9170	58	143	17	-	25	
084.8900E	84B2	확장	84.89	29.3455	114.2355	5.8046	35.9321	155.9722	58	13	-	-	5	

- 상기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2026.08.06.)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계약 가능월에 개별안내(등기우편)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18.02)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주택형	주택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	
074.8200A	74A	51,521,000	11,000,000	40,521,000	515,210
084.6900A	84A1	63,580,000	13,000,000	50,580,000	570,020
084.9400B	84A2	63,580,000	13,000,000	50,580,000	570,020
084.9400C	84A3	63,580,000	13,000,000	50,580,000	570,020
084.8600D	84B1	63,580,000	13,000,000	50,580,000	570,020
084.8900E	84B2	63,580,000	13,000,000	50,580,000	570,020

- 상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항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시(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 원]

주택형	주택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 임대료
074.8200A	74A	74,000,000	308,340	125,521,000	206,870
084.6900A	84A1	82,000,000	341,670	145,580,000	228,350
084.9400B	84A2	82,000,000	341,670	145,580,000	228,350
084.9400C	84A3	82,000,000	341,670	145,580,000	228,350
084.8600D	84B1	82,000,000	341,670	145,580,000	228,350
084.8900E	84B2	82,000,000	341,670	145,580,000	228,350

※ 임대보증금 감액 시(월 임대료 확대) 예시 : **현행 전환요율 3.5% 적용 시**

[단위 : 원]

주택형	주택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 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 임대료
074.8200A	74A	105,000	36,000,000	15,521,000	620,210
084.6900A	84A1	134,160	46,000,000	17,580,000	704,180
084.9400B	84A2	134,160	46,000,000	17,580,000	704,180
084.9400C	84A3	134,160	46,000,000	17,580,000	704,180
084.8600D	84B1	134,160	46,000,000	17,580,000	704,180
084.8900E	84B2	134,160	46,000,000	17,580,000	704,18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주택타입	합 계	택지비	건축비
074.8200A	74A	170,047	41,444	128,603
084.6900A	84A1	193,454	46,912	146,542
084.9400B	84A2	191,596	47,050	144,546
084.9400C	84A3	191,545	47,050	144,495
084.8600D	84B1	194,049	47,006	147,043
084.8900E	84B2	191,733	47,022	144,711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74, 8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따릅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함)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18.02)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금회 모집으로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순번 도래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하시게 되면 만기분양전환(10년 임대무기간 경과 시점인 2028년 예정) 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합니다.

II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

신청자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06.(목)]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중인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김해진영 센텀큐브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 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만을 인정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순번을 부여하는 주택으로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 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 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 분양권 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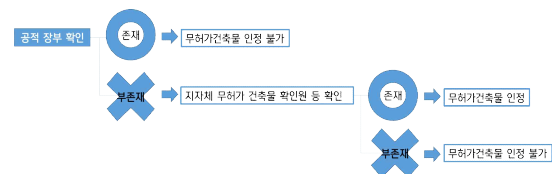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1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의 지역 내에서 건축하거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 제출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9.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면적연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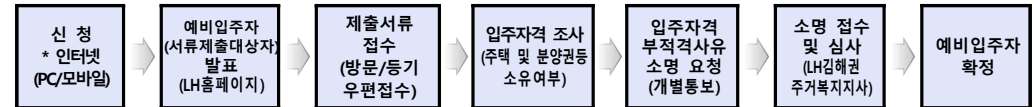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기준

주택형별 접수기간 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합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주택명도일 순으로 배정되며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선정절차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 또는 1인이 당첨 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됩니다.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점으로 함. 이 경우 청약 접수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점으로 함.)

III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신청일정 및 세부일정

신청일시	신청방법	비고
2026.08.18.(화) 10시 ~ 2026.08.19.(수) 16시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PC/모바일) 신청 (방문 신청 불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LH청약플러스)

- 동별·층별·항별·측 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동호회장은 부적격, 계약포기,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자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인터넷 (PC / 모바일)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 선택 및 이용약관 등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신청시간>

2026.08.18.(화) 10시 ~ 08.19.(수) 16시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 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만 가능

※ 신청마감시각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 신청형은 추후 다른 주택 신청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었다하더라도 **서류제출 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나이, 거주지역,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취소,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V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등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일시	확인방법	비고
2026.08.21.(금) 16:00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결과조회	예비입주자 순번은 우리공사 전산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 함

■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방문/등기우편 제출)

신청순위	서류제출일시 (방문/등기우편)	서류제출장소	계약체결 안내
무순위	2026.08.25.(화) ~ 08.26.(수) (10시 ~ 16시) ※ 등기우편은 2026.08.26.(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가급적 빠른등기 발송 요망)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우.50983 경남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센텀큐브 예비자 모집 담당자 앞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예비입주자 제출서류(2026.08.0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2026.08.25.(화) ~ 08.26.(수) (10시~16시))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필수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제출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제출 시는 신청자 및 제출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③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원 전원 서명 후 제출) ※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① 신청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 초본 (2026.08.06. 이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된 경우)
	③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재외동포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V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기간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자 지위는 취소 처리됩니다.**
-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는 서류제출 및 소명 후 10월 중순이후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동호배정은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영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동호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예비자 미계약 등으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안내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LH김해권주거복지지사(055-907-8100) 또는 LH 마이홈센터(1600-1004)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 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VI

유의사항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김해진영 센텀큐브(김해진영2 B5블록)은 주택도시보증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4호공공임대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주)NHF제4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주)NH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15.10.14.)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의 계약자(입주예정인 경우)는 다른 임대주택을 해약 한 경우에만 동 주택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모집으로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순번 도래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하시게 되면 만기분양전환(10년 임대무기기간 경과 시점인 2028년 예정) 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합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여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여건 등

- 김해대로변 및 김해대로변 좌.우측 구간에 방음벽 설치로 504동, 505동, 506동의 1,2층 및 3층 일부는 조망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통신 중계기 장비 시설물이 503동, 505동 및 주민복지관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공간 확보를 위하여 1층 일부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도 가정어린이집 인가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10.14.) 및 팸플릿, 현장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주)NHF제4호공공임대 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 (476-81-00036)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농협은행주식회사 (104-86-39742)	남광토건(주) (120-81-01995)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임대상담 및 서류제출 장소

- 임대상담문의 : ☎ 1600-1004
- 서류제출장소 : 경남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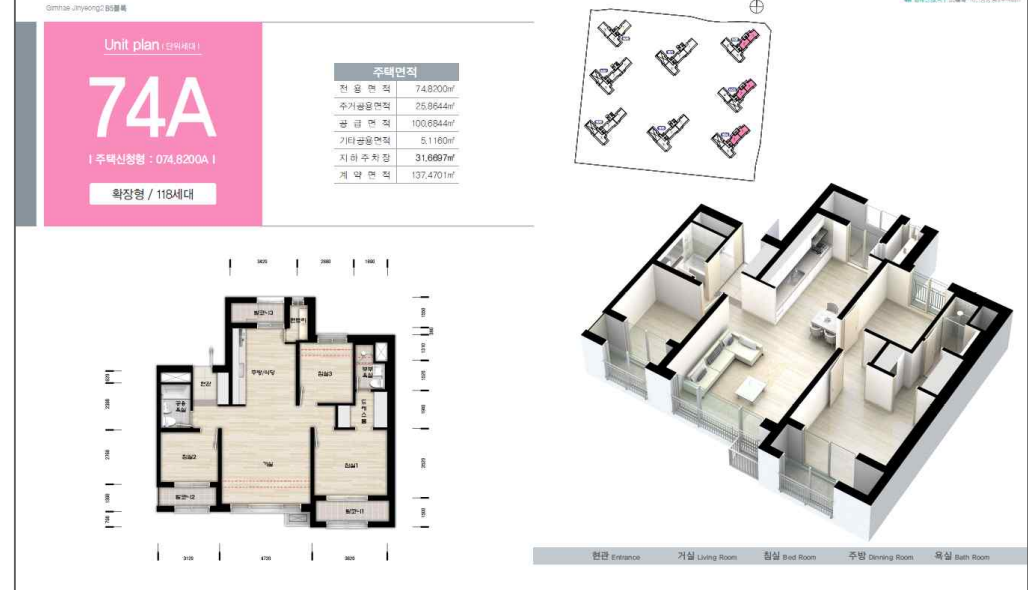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우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8. 06.

- 시 행 사 : [주]NHF제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면도 등(참고자료)

【 김해진영 센텀큐브 74A형 】



【 김해진영 센텀큐브 84A형 】



평면도 등(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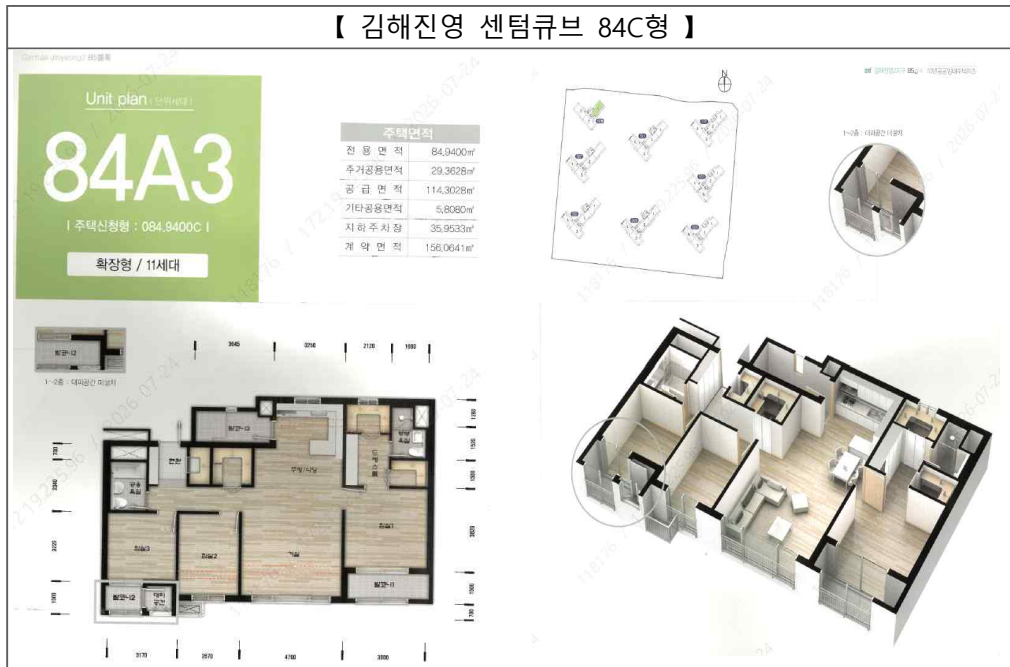
【 김해진영 센텀큐브 84B형 】



【 김해진영 센텀큐브 84D형 】



【 김해진영 센텀큐브 84C형 】



【 김해진영 센텀큐브 84E형 】



주택형	74A형, 84A형, 84D형, 84E형	예비자번호	
신청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본 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주)NHFF제4호공공임대주택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주)NHFF제4호)가 시행하는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이며, LH는 (주)NHFF제4호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건설·공급 및 관리·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지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차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할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 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